

 <b>한국소비자원</b> Korea Consumer Agency	<h1>보도자료</h1> <p>“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 기관”</p>	 페이스북 @kcanews  인스타그램 @kca.go.kr	
<b>이 자료는 8월 7일(화)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방송·인터넷 매체는 8월 6일(월) 12시]</b>			
<b>배포일</b>	2018년 8월 3일(금) (총 5쪽)	<b>담당부서</b>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b>담당자</b>	김병법 팀장 (043-880-5831) 채희영 대리 (043-880-5833)

**해수욕장 5곳 중 1곳, 안전요원·동력 구조장비가 없어  
 안전사고에 즉각 대응 어려워**  
 - 취약자·여성을 위한 편의시설이 미흡한 곳도 있어 -

해수욕장이 국민 휴양지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으나, 상당수 해수욕장은 여전히 안전요원, 동력 구조장비, 감시탑, 물놀이구역 부표 등이 없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의 전국 해수욕장 20곳\*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이용자 상위 10곳 지정 해수욕장\*\* 및 지역거점별 각 5곳 지정·비지정 해수욕장  
 \*\* 관리청(기초 지방자치단체)이 지정해 관리·운영하는 해수욕장

**□ 비지정 해수욕장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정 해수욕장은 안전요원 배치, 동력 구조장비 구비, 감시탑 설치, 물놀이구역 부표 설치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반해 지정되지 않은 해수욕장(비지정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안전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해수욕장 물놀이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동력 구조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곳 중 4곳(모두 비지정)에는 안전요원과 동력 구조장비가 모두 없어 유사 시 안전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또한, 조사대상 20곳 중 8곳(지정 4곳·비지정 4곳)에는 감시탑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요원의 넓은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5곳(지정 1곳·비지정 4곳)에는 물놀이구역 부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가 깊은 수역으로 제한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다.

[ 안전요원 및 동력 구조장비 ]



[ 감시탑 ]



[ 물놀이구역 부표 ]



□ **취약자·여성을 위한 편의시설이 미흡한 해수욕장도 다수 있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정 해수욕장에는 탈의시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화장실, 샤워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곳 중 5곳(지정 2곳·비지정 3곳)에는 탈의시설이, 2곳(모두 비지정)에는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모두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었다.

특히, 화장실이 설치된 18곳 중 4곳(모두 지정)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취약자가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5곳(지정 4곳·비지정 1곳)의 여성 화장실에는 성범죄 등 응급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샤워시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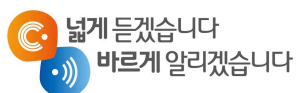
[ 취약자 전용 화장실 ]



[ 비상벨 ]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해수욕장 안전관리 강화 ▲비지정 해수욕장 안전기준 마련 ▲해수욕장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 < 붙임 >

### 1 일반현황

#### □ 해수욕장 정의<sup>1)</sup> 및 용어

- (정의) “해수욕장”은 ‘해수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해수욕”은 ‘건강증진·피서·레크리에이션 등을 목적으로 바닷물에 몸을 씻는 행위’로 정의됨.
- (용어)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해수욕장”이 정식 용어로 인정됐으나, “해변” 용어도 혼용되고 있음.

#### □ 지역별 현황

- (요약) 2018년 현재 전국 지정 해수욕장\*은 267개소로 추산\*\* 되고, 2016년 통계<sup>2)</sup>에서는 비지정 해수욕장을 86개소로 추정한 바 있음.
  -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청(기초 지방자치단체)이 지정하여 관리·운영하는 해수욕장
  - \*\* 해양관광포털 바다여행(해양수산부 지원으로 한국어촌어항협회 운영)의 통계수치에 인천광역시 소재 지정 해수욕장(누락 추정)을 합산
- (상세현황\*) 지정 해수욕장의 분포현황은 인천광역시 7개소, 충청남도 33개소, 전라북도 8개소, 전라남도 55개소, 경상남도 26개소, 부산광역시 7개소, 울산광역시 2개소, 경상북도 25개소, 강원도 93개소, 제주특별자치도 11개소임.
  - \*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인천을 시작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정리

#### □ 관련 안전기준 및 시설물 설치기준<sup>3)</sup>

- (안전기준)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해수욕장은 안전요원 배치, 동력 구조장비 구비, 감시탑 설치, 물놀이구역 부표 설치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함.
- (시설물 설치기준) 탈의시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화장실, 샤워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함.

1) 윤인주·홍장원, 「우리나라 해수욕장 현황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2016. 5. 31.)

2) 상동

3) 제6조 제1항, 제34조 제1·2항,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 제17조 및 [별표3]

## 조사 개요

- **(조사대상)** 전국 해수욕장 20곳(지정 해수욕장 15곳·비지정 해수욕장 5곳)
  - (지정) 이용자 상위 10곳 해수욕장 및 지역거점별 5곳 해수욕장
  - (비지정) 지역거점별 5곳 해수욕장
- **(조사항목)** 관련 안전기준 및 시설물 설치기준 준수 여부
- **(조사기간)** 2018. 7. 10. ~ 7. 30. (개별 해수욕장 개장일에 맞춰 진행)

## □ 비지정 해수욕장은 유사 시 안전사고 대응 어려워

- 해수욕장 물놀이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적 자원인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물적 자원인 동력 구조장비를 구비해야 함.
  - **(안전요원)** 조사대상 해수욕장 20곳 중 5곳(지정 1곳·비지정 4곳)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았음.
  - **(동력 구조장비)** 조사대상 해수욕장 20곳 중 6곳(지정 1곳·비지정 5곳)에는 동력 구조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음.
  - **(문제점)** 조사대상 해수욕장 20곳 중 4곳(모두 비지정)에는 안전요원과 동력 구조장비가 모두 없어 유사 시 안전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었음.

## □ 감시탑, 물놀이구역 부표 미설치한 곳도 있어

- 감시탑은 안전요원의 시야를 넓게 확보해 주는 시설물이고, 물놀이구역 부표는 이용자에게 수역의 깊이를 알려주는 시설물임.
  - **(감시탑)** 조사대상 해수욕장 20곳 중 8곳(지정 4곳·비지정 4곳)에는 감시탑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 **(물놀이구역 부표)** 조사대상 해수욕장 20곳 중 5곳(지정 1곳·비지정 4곳)에는 물놀이구역 부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 **취약자·여성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 필요해**

- **(탈의시설)** 조사대상 해수욕장 20곳 중 5곳(지정 2곳·비지정 3곳)에는 탈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 **(화장실)** 조사대상 해수욕장 20곳 중 2곳(모두 비지정)에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 **(취약자 전용 화장실)** 화장실이 설치된 해수욕장 18곳 중 14곳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취약자가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나머지 4곳(모두 지정)에는 일반 화장실만 설치되어 있었음.
  - **(비상벨)** 화장실이 설치된 해수욕장 18곳 중 13곳의 여성 화장실에는 성범죄 등 응급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나머지 5곳(지정 4곳·비지정 1곳)의 여성 화장실에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 **(샤워시설)** 조사대상 20곳 중 2곳(모두 비지정)에는 샤워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